

수원지방법원 2023. 8. 17 선고 2022가단1173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

변 론 종 결 2023. 7. 6.

판 결 선 고 2023. 8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이와 같이 선택한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2020. 11. 5.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점포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,000,000원, 차임 월 8,000,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 나. 원고는 피고에게 2020. 11. 5. 40,000,000원, 2021. 6. 10. 48,800,000원을 각 송금하였다. 다. 원고와 피고는 2020. 11. 24. 위 가.항 기재 임대차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등부 2020년 제3947호로 인증서(이하 ‘이 사건 인증서’라 한다)를 작성하였는바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특약사항

(췌) E F가 불이행한 미지급금 8천만 원을 승계하되, 그중 4천만 원은 계약 당시 지불하고, 나머지 4천만 원은 2021. 6. 10.까지 지불한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

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00,000,000원 이외에 80,000,000원(이하 ‘이 사건 지급금’이라 한다)을 전 임차인을 대신하여 갚고, 그렇지 않으면 점포 영업권을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. 이에 원고는 전 임차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의 협박에 따라 추후 반환청구 할 목적으로 80,000,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.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게 된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1)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,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(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등 참조). 살피건대, 앞서 살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이 사건

인증서와 같이 피고에게 80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인증서상 약정에 따라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이는바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급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2)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였다거나 강요하여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여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현정